

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내규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4.22.		16		
2	2023.2.27.		17		
3	2026.2.9.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본 대학교 직원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4.22.>

제2조 (적용범위) 이 내규는 본 대학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경리·회계직 등 주요 직무 종사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[조문개정 2013.4.22.]

제3조 (재정보증) ① 대학은 매년 대상 직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는 사무처 총무팀으로 한다.<개정2013.4.22.>

② 보증보험은 본대학교를 피보험인으로, 해당 직원은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<별표1>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.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보험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③ 직원의 신규임용 또는 퇴직에 따른 신분변동 시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4.22.>

제4조 (보험료 부담) ① 보증보험료는 해당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, 10년 이상 재직된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한다.<개정 2013.4.22.>

② 경리·회계직인 직원 중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과의 차액분을 대학에서 부담한다.<신설 2013.4.22.>

제5조 (추가보전) ① 재직 중인 직원의 고의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재정 손실은 보증보험 가입액으로 충당하며 손실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직원 본인이 추가로 보전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4.22.>

② 추가보전 조치를 통고 받은 직원은 지체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기존 조교에서 실습사무직 직종(명칭)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<개정 2023.2.27., 2026.2.9.>

직종·업무별 재정보증보험 가입액

직종 및 업무별	재정보증보험 가입액
경리·회계직	2,000만원 이상
행정직, 행정사무직	500만원 이상
기타 비정규직	300만원 이상